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201561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장세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윤성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1. 1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가합510244 판결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46,82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확정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H’라 한다)는 교육정보 서비스업(온라인 포함), 유·무선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교육 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며, J은 C의 형이자 G의 감사,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0. 11.경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1. 5.경 원고에게 D이 진행하는 교육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1.부터 2012. 12. 4.까지 D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D으로부터 기명식 보통주 35만 주를 발행받았다.

2) C이 D을 통해 추진하던 위 교육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C은 2013. 8.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투자로 입은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C이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고 C이 경영하는 모든 회사의 외부투자자 지분을 제외한 C 지분의 50%를 인도하며, C이 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C에게 D의 기명식 보통주 35만 주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259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6.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9. 확정되었다.

다. G 및 H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

1) G는 2015. 2. 17. 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목록 1번(G 계좌 송금분)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H는 2015. 3. 4.부터 2017. 5. 25.까지 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의 위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별지 목록 1번 내지 45번(H 계좌 송금분) 기재와 같이 합계 436,824,32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9, 12, 13호증, 을 제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들은 C이 운영하던 D 폐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만에 설립된 법인들로 사업의 내용이 스마트유치원 사업으로 D과 동일하고, 영업 시스템, 영업망, 인적·물적 조직 등을 D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였으며, C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로 불리는 등, C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가지급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가지급금을 송금 받았다. 이처럼 C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가지급금을 이 사건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C의 행위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피고에게로 송금된 내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 행위와 관련된 C과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446,82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회사들이 C에게 가지급금 내지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C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고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일 것을 요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은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는 C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가지급금 상당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C의 송금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서 C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사실상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C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채무를 배후자인 개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부담한 채무를 회사재산으로 변제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경우 법인격 제도의 실현 및 회사의 자본충실 저해의 문제와 해당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 단순히 집행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배후자가 설립한 회사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등으로 그 인정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갑 제8, 9호증, 을 제1, 4, 5, 15, 22, 26, 37, 46, 6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회사들이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C이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은 2002년경부터 무선데이터 통신기기 사업을 하는 T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C이 D을

운영하는 동안 D 사업에 필요한 슬레이트 PC 및 그 부속기기 등을 D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D의 사업 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2012. 3.경에는 D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5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 상당을 대여 형식으로 투자하는 등 D 사업에 관여해 와서, D의 스마트유치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J은 G의 감사로,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C은 이 사건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G가 설립될 당시 본점 소재지로 등기된 서울 강서구 U, V호는 J의 소유 사무실이다. 또한 H와 W 주식회사 사이의 제휴업체 거래약정, G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H의 교재 공급 계약 등 이 사건 회사들의 대외적 처분문서는 모두 J 또는 X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문서에 드러난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은 C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인다.

다) G는 2013. 9. 2. 주식회사 Y와 사이에 주식회사 Y이 자금을 집행하고 G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금융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은 주식회사 Y의 Z과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업무 협의를 하였고, H는 2015. 1. 26.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사이에 H가 판매하는 교구·교재 등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H의 재매입·대위변제 의무 등을 정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J이 H의 W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와 같이 J은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C이 이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라) C이 G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이의 거래에 대한 물품명세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송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C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마) C이 운영하던 D과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무선망을 이용한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스마트 유치원'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이 사건 회사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위 시스템을 리스계약을 통하여 공급하고, 이와 더불어 자체 제작하거나 저작권을 구입한 유아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등 그 영업의 구체적

형태가 D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회사들은 2015.경부터는 스마트 유치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J은 H의 유아교육용 교재 공급과 관련하여 H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 50명과 공모하여 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그 부풀린 금액을 위 원장들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교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사립학교법위반죄, 영유아보육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를 C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들이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446,824,320원을 송금한 행위를 두고 C의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오영상, 판사 이재혁

## 별지

## 목 록

| 순번 | 입금일자         | 액수         |
|----|--------------|------------|
|    | 계좌 송금분       |            |
| 1  | 2015. 2. 17. | 10,000,000 |
|    | 계좌 송금분       |            |
| 1  | 2015.03.04   | 10,000,500 |
| 2  | 2015.03.14   | 2,500,500  |
| 3  | 2015.03.25   | 10,000,500 |
| 4  | 2015.04.30   | 10,000,500 |
| 5  | 2015.05.09   | 900,500    |
| 6  | 2015.05.26   | 10,000,500 |
| 7  | 2015.06.25   | 10,000,000 |
| 8  | 2015.06.30   | 10,840,000 |
| 9  | 2015.07.16   | 5,393,020  |
| 10 | 2015.07.24   | 10,000,000 |
| 11 | 2015.08.25   | 10,000,000 |
| 12 | 2015.09.25   | 10,000,000 |
| 13 | 2015.10.26   | 10,000,000 |
| 14 | 2015.11.25   | 10,000,000 |
| 15 | 2015.12.24   | 10,000,000 |
| 16 | 2016.01.25   | 10,000,000 |
| 17 | 2016.02.25   | 10,000,000 |
| 18 | 2016.02.25   | 10,000,000 |
| 19 | 2016.03.20   | 19,500,000 |
| 20 | 2016.03.25   | 10,000,000 |
| 21 | 2016.04.25   | 10,000,000 |
| 22 | 2016.05.25   | 10,000,000 |
| 23 | 2016.06.24   | 10,000,000 |
| 24 | 2016.07.01   | 5,734,000  |
| 25 | 2016.07.05   | 3,175,000  |
| 26 | 2016.07.25   | 10,000,000 |
| 27 | 2016.08.25   | 10,000,000 |
| 28 | 2016.09.02   | 2,500,000  |
| 29 | 2016.09.06   | 22,810,540 |
| 30 | 2016.09.06   | 10,156,110 |
| 31 | 2016.09.06   | 1,003,910  |
| 32 | 2016.09.06   | 6,208,740  |
| 33 | 2016.09.13   | 10,000,000 |
| 34 | 2016.09.13   | 10,000,000 |
| 35 | 2016.09.26   | 10,000,000 |
| 36 | 2016.10.25   | 10,000,000 |

|    |            |             |
|----|------------|-------------|
| 37 | 2016.11.01 | 10,000,000  |
| 38 | 2016.11.25 | 10,000,000  |
| 39 | 2016.12.02 | 33,000,000  |
| 40 | 2016.12.23 | 10,000,000  |
| 41 | 2017.01.06 | 3,000,000   |
| 42 | 2017.01.25 | 10,000,000  |
| 43 | 2017.02.24 | 10,000,000  |
| 44 | 2017.04.25 | 10,000,000  |
| 45 | 2017.05.25 | 10,000,000  |
| 합계 |            | 446,824,320 |

